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947호

2021년 7월 8일 목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4호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변경) 고시 2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18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20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882호 공시송달 공고 2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891호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공청회 개최 공고 2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895호 필수목적 출국(경제활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공고 2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9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3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90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33

회 람									
--------	--	--	--	--	--	--	--	--	--



고 시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4호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 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14개소

연번	종별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비고
1	유형	35	삼암돈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223-4 외	
2	유형	36	분오리돈대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185-2 외	
3	기념물	16 47	강화내가오상리고인돌 강화오상리고인돌군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125-1 외	
4	기념물	22	계룡돈대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	
5	기념물	23	교동읍성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25-1 외	
6	기념물	31	강화대산리지석묘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189-1	
7	기념물	32	강화부근리점골고인돌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743-6 외	
8	기념물	37	망양돈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80	
9	기념물	38	건평돈대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	
10	기념물	45	강화삼거리고인돌군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118 외	
11	기념물	46	강화고천리고인돌군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96 외	
12	기념물	48	강화교산리고인돌군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108 외	
13	문화재 자료	10	선수돈대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31 외	
14	문화재 자료	11	망월돈대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107 외	

나.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3. 기준시행일 : 시보 고시일

4. 문 의 처

가.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 문화유산과

- 주 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 연락처 : ☎ 032-440-4034, 전송 032-440-8693

나. 지방자치단체(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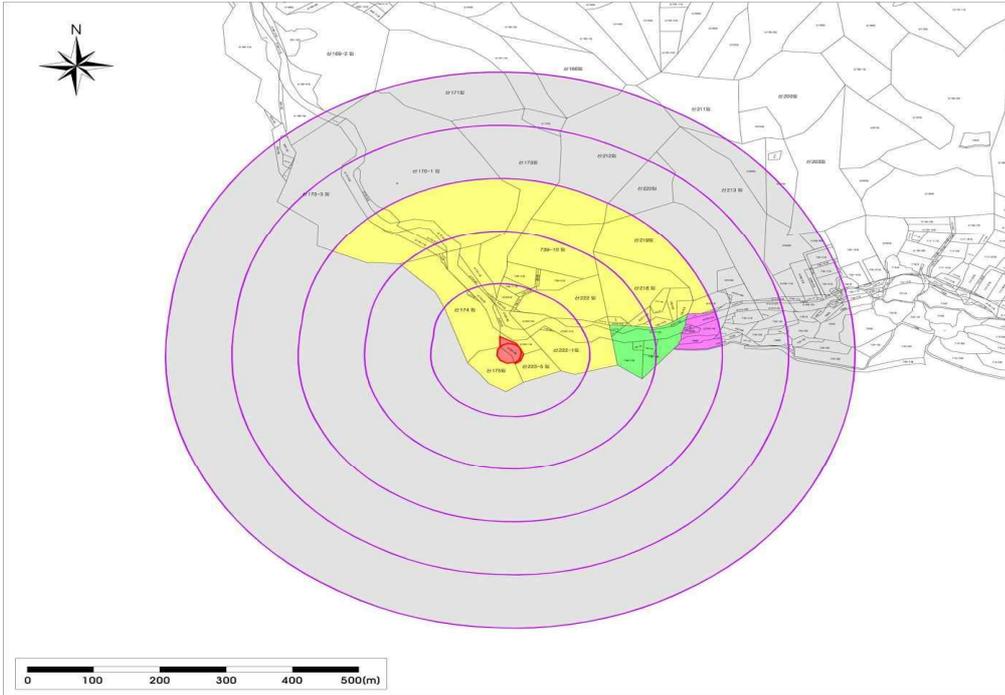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관광과 (☎032-930-3893)

5. 참고사항

-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① 인천소식 ⇒ 고시/공고/시보 ⇒ 인천시보
 - ② 실·국 홈페이지 : 분야별 ⇒ 문화·관광 ⇒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별첨자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14개소)

1.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5호 삼암돈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유형문화재 제35호
삼암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223-4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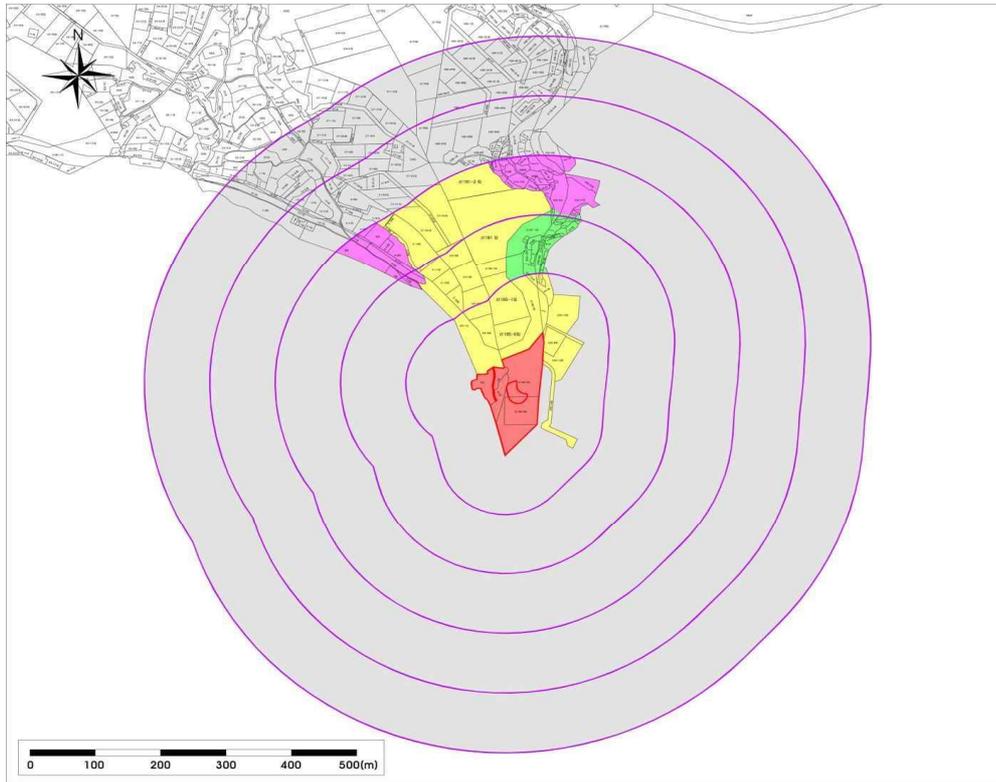
-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구분	허용기준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5.5m 이하
3구역	○최고높이 13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m 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축척 1 : 5,000

구분	허용기준	
	평지부	경사지부(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5.5m 이하
3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3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m 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2.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36호 분오리돈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유형문화재 제36호

분오리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거리 산185-2 외

범 례

-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5.5m 이하
2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13m 이하
3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13m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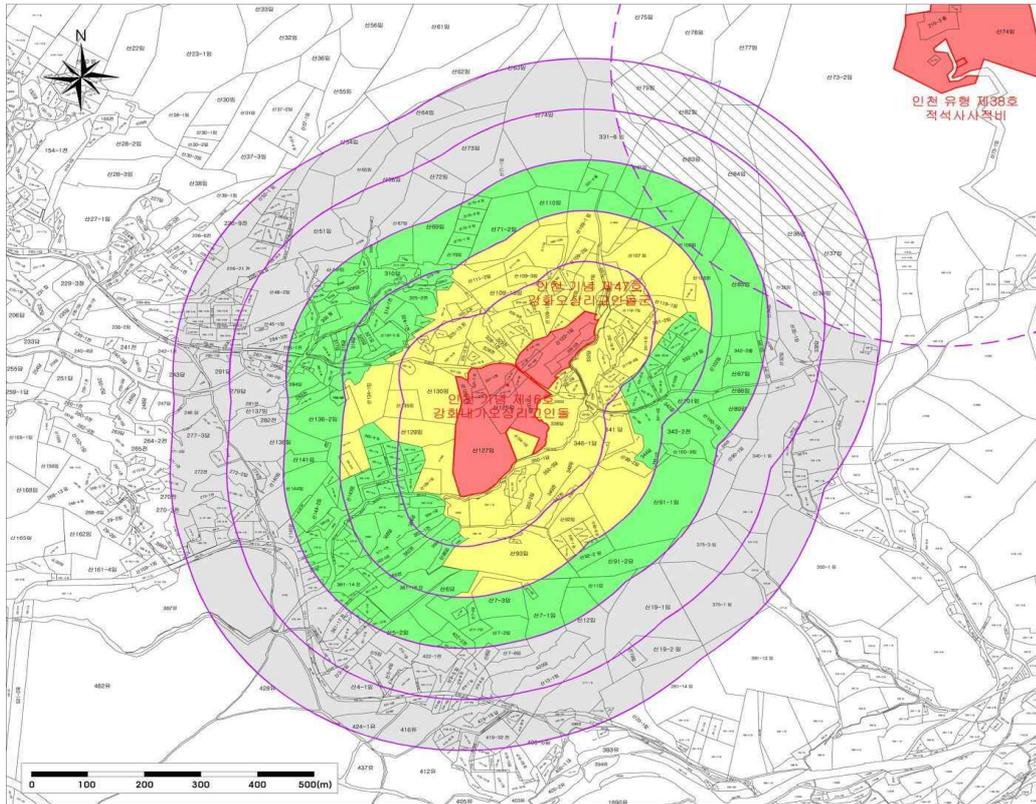
그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축 척 1 : 5,000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5.5m 이하
3구역	○ 개별심의	○ 최고높이 13m 이하
그외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3.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6호 강화내가오상리고인들 제47호 강화오상리고인들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기념물 제16호
강화내가오상리고인들

기념물 제47호
강화오상리고인들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125-1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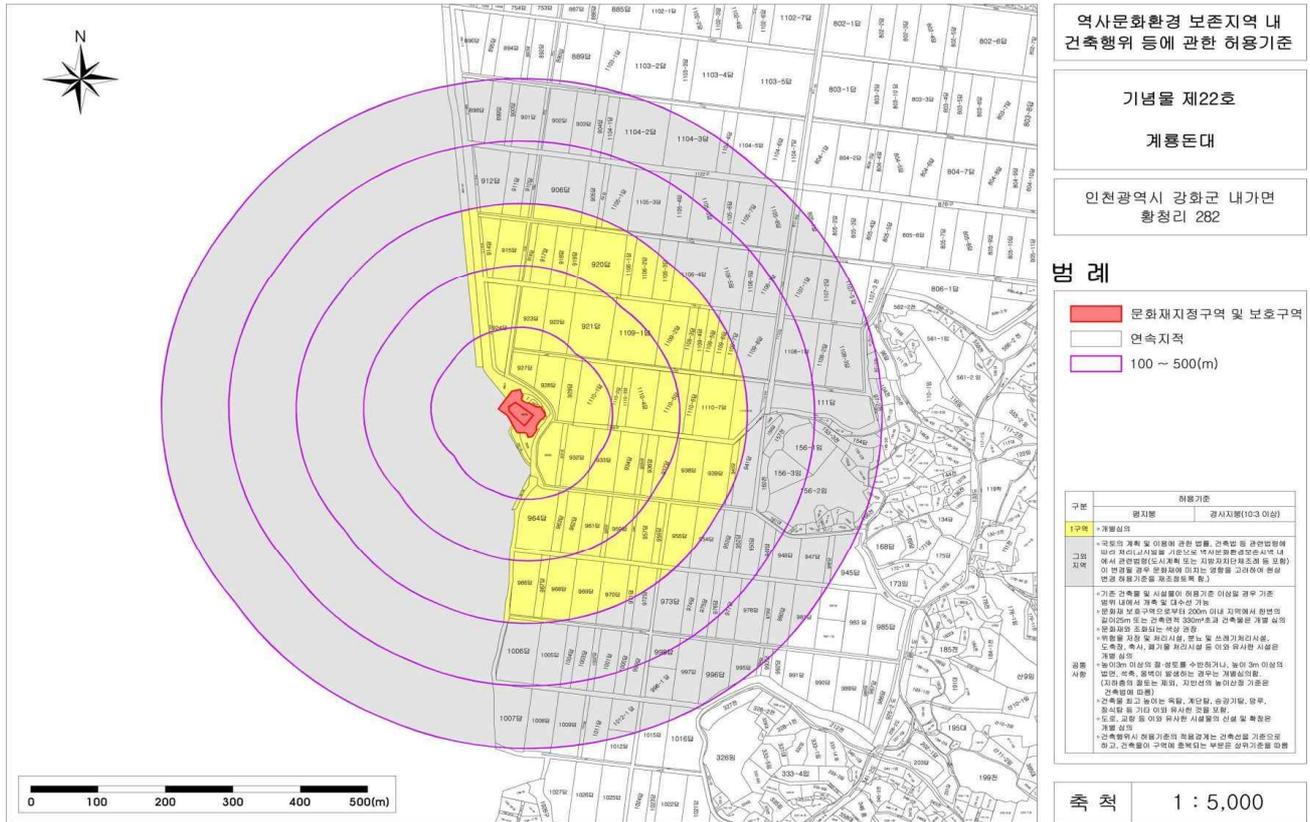
-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존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기타 사항	○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38호 적석사사적비)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m 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축척 1 : 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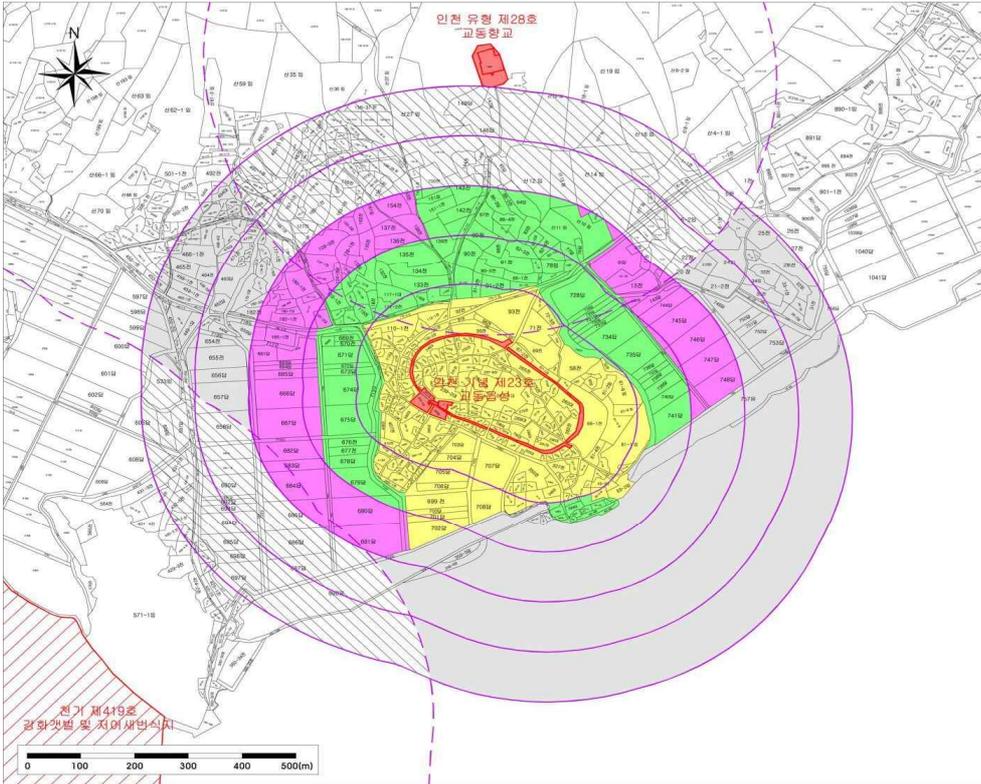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기타 사항	○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38호 적석사사적비)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m 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4.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2호 계룡돈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5.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 교동읍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기념물 제23호
교동읍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225-1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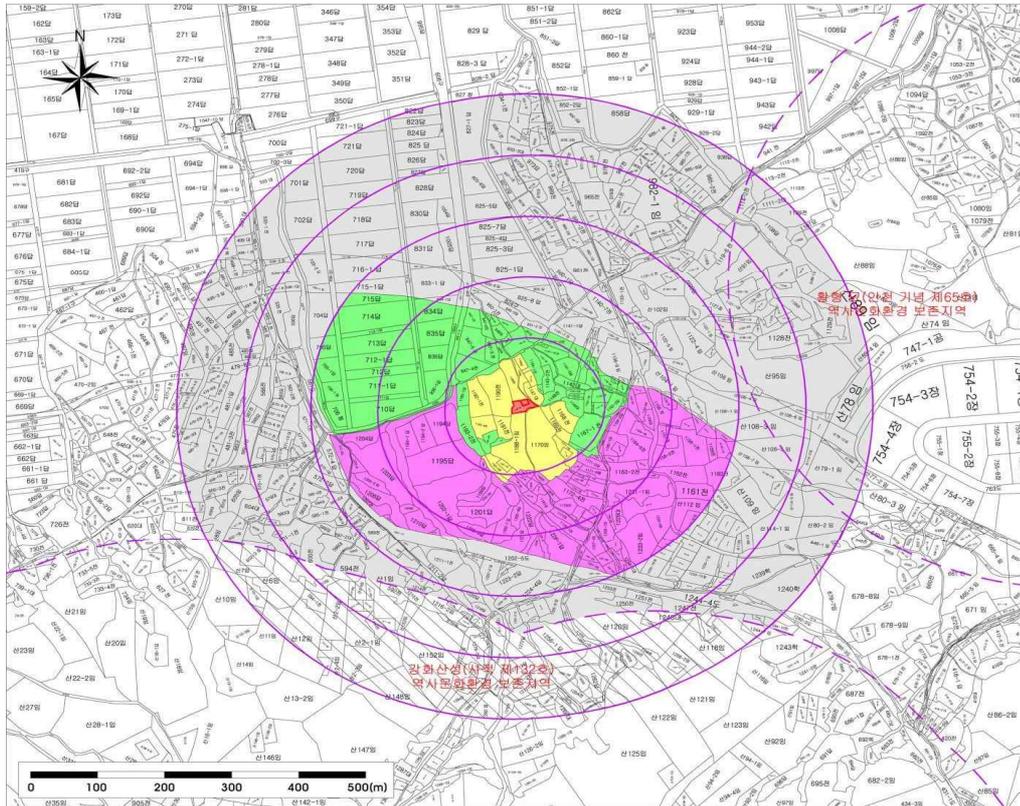
-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구분	허용기준
1구역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0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기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번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축척 1 : 6,000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0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기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번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6.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1호 강화대산리지석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기념물 제31호
강화대산리지석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189-1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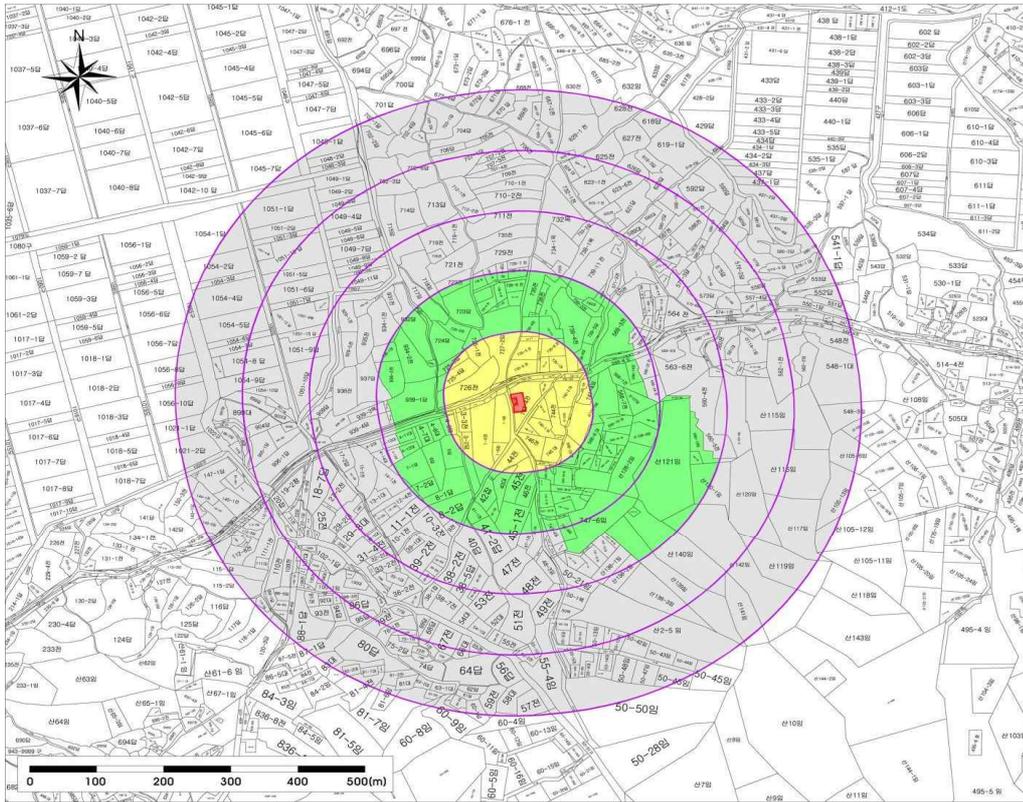
-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연속지역
- 100 ~ 500(m)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0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기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및 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8호 교동향교)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축척 1 : 5,000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0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기타 사항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 및 인천광역시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제28호 교동향교)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7.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2호 강화부근리점골고인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기념물 제32호
강화부근리점골고인돌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743-6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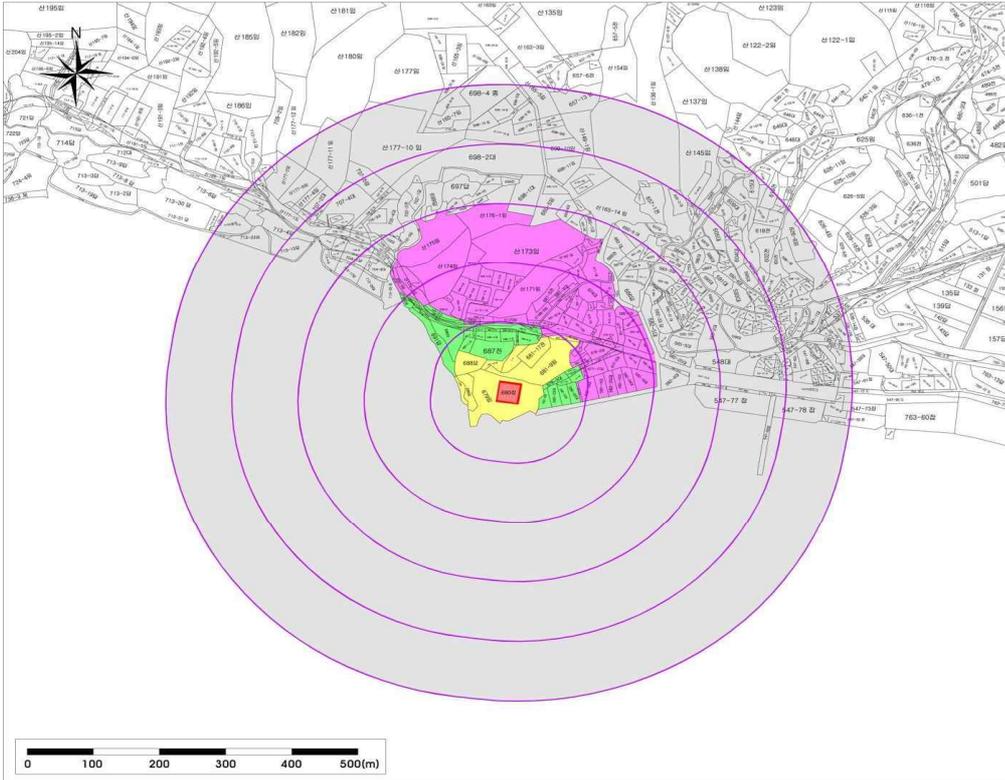
-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구분	허용기준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최고높이 7.5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축척 1 : 5,000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번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8.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7호 망양돈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기념물 제37호
망양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80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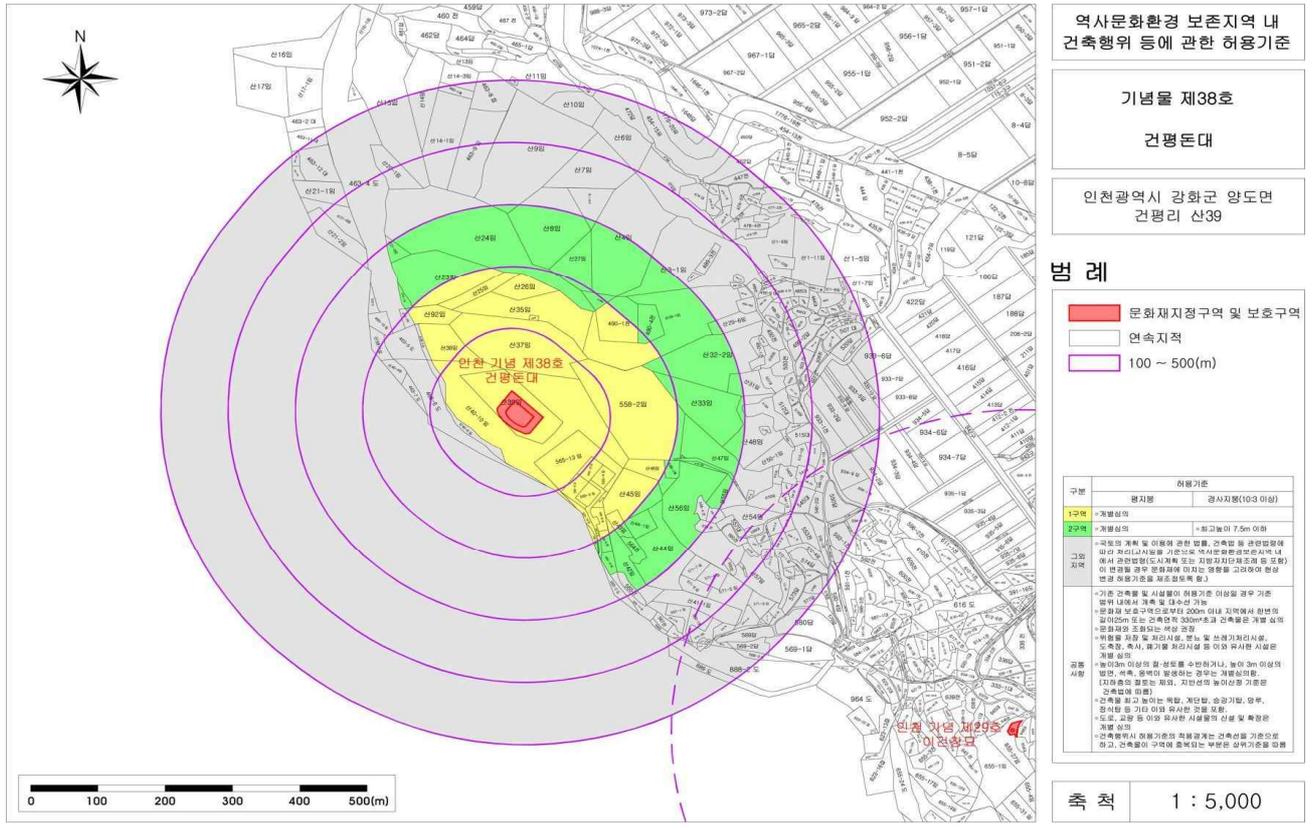
-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구분	허용기준
1구역	개별심의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3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 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축척 1 : 5,000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3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m 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9.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8호 건평돈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기념물 제38호
건평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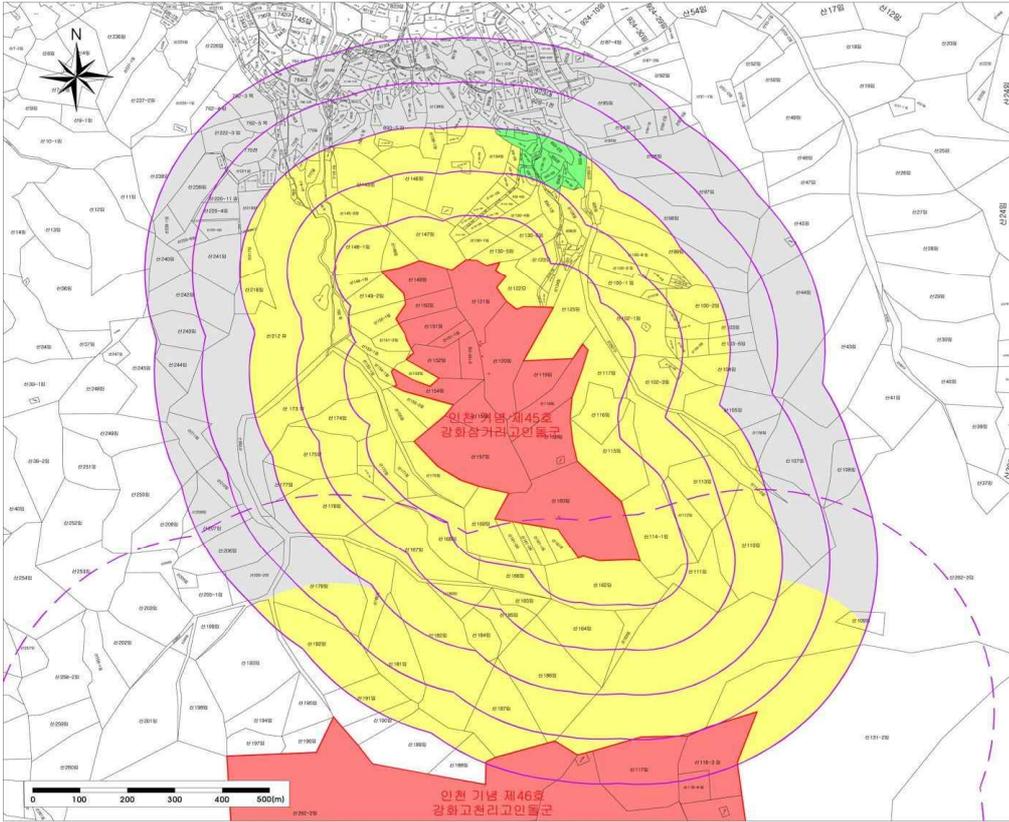
-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구분	허용기준
1구역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m 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축척 1 : 5,000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m 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10.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5호 강화삼거리고인돌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기념물 제45호
강화삼거리고인돌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118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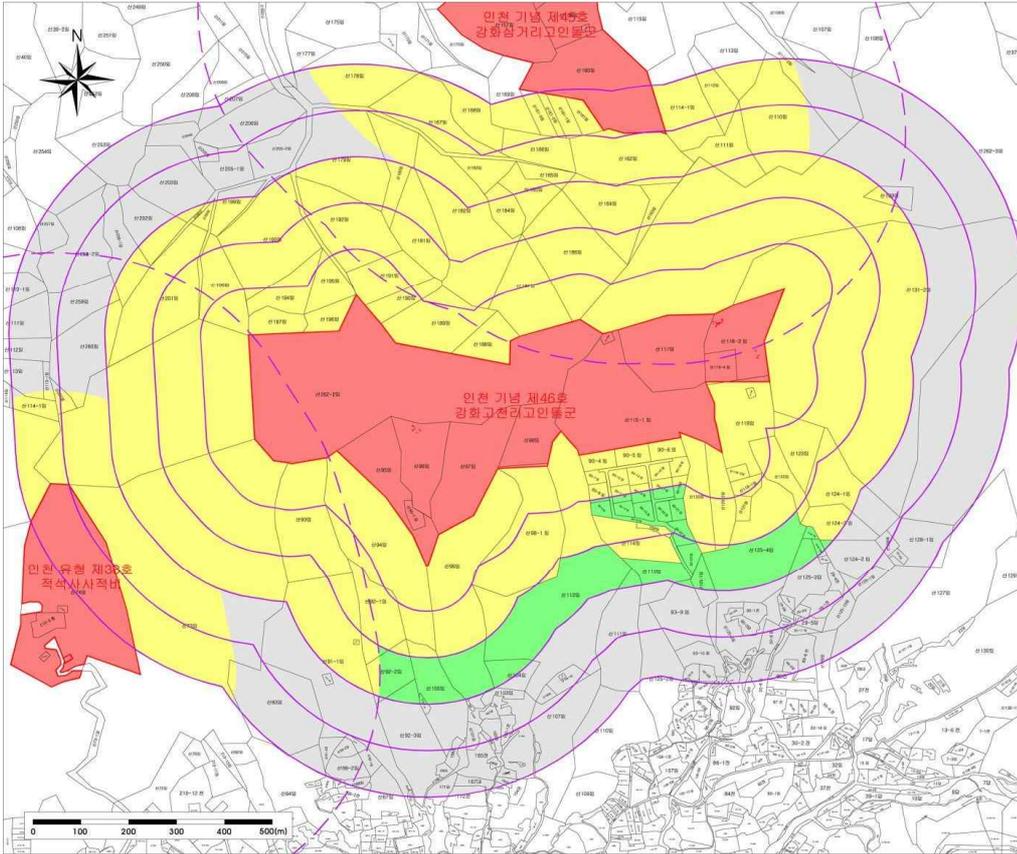
범례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존구역
 연속지역
 100 ~ 500(m)

구분	허용기준
1구역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	개별심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축척 1 : 7,000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5.5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11.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6호 강화고천리고인들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기념물 제46호
강화고천리고인들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96 외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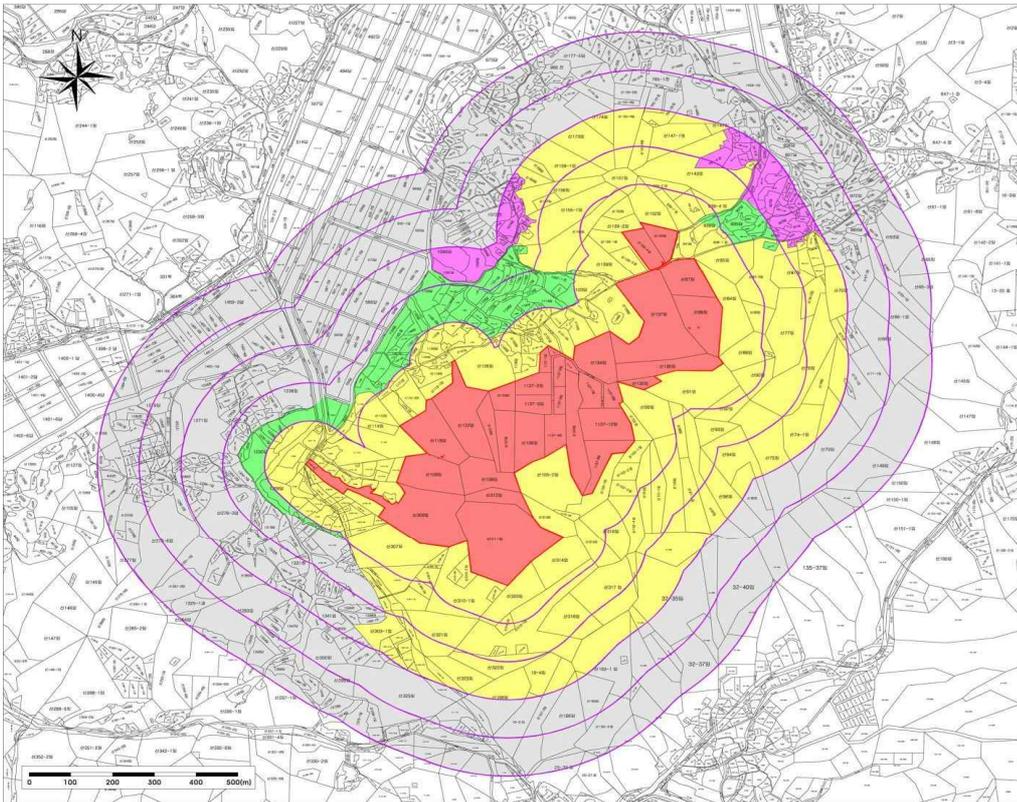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연속지적
100 ~ 500(m)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축 척 1 : 7,000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12.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48호 강화교산리고인들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기념물 제48호
강화교산리고인들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서면
교산리 산108 외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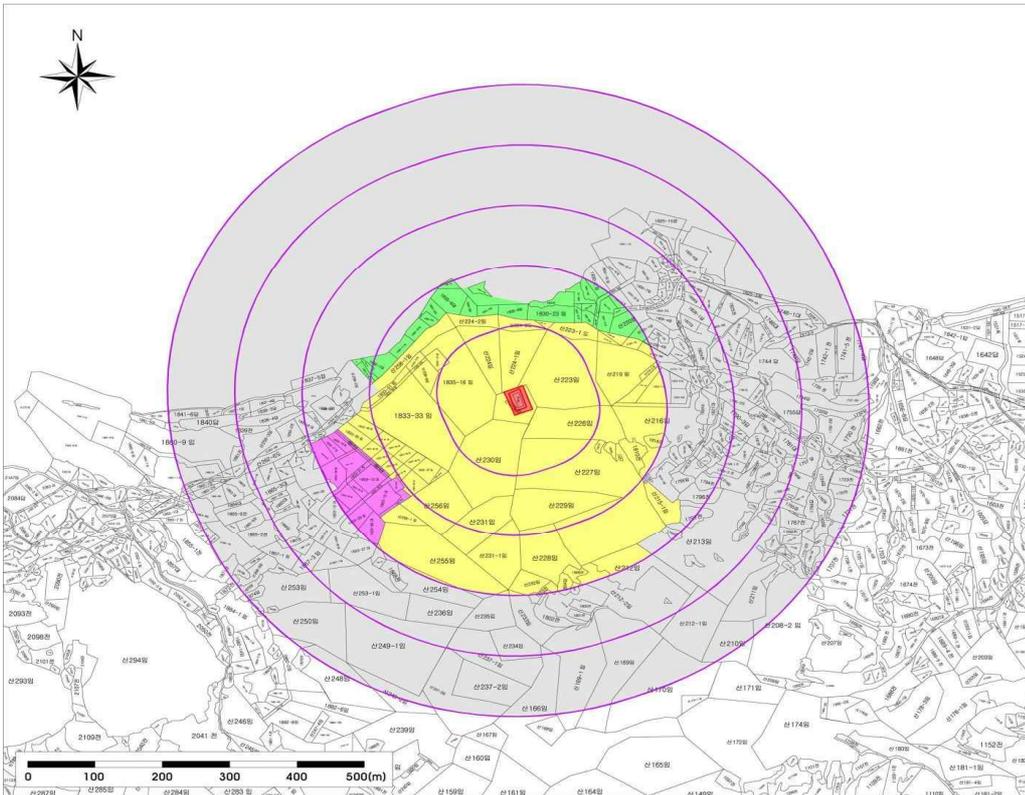
-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구분	허용기준
1구역	개별심의 경사지붕(10:3 이상)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3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m 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축척 1 : 8,000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3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m ²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13.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0호 선수돈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문화재자료 제10호
선수돈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31 외

범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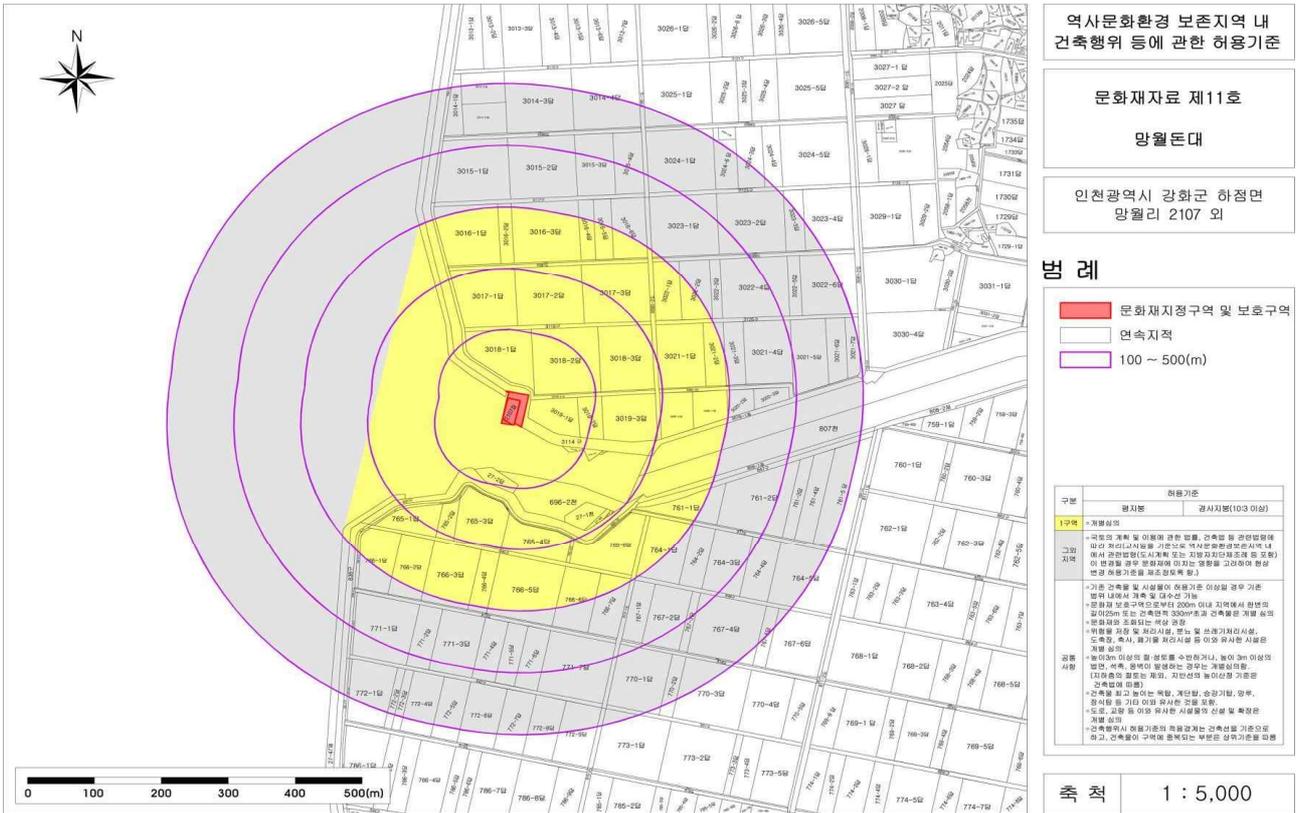
- 문화재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 연속지적
- 100 ~ 500(m)

구분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3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축척 1 : 5,000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0m 이하
3구역	○개별심의	○최고높이 13m 이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14.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1호 망월돈대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개별심의	
그외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에서 관련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기존 범위내에서 개축 및 대수선 가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 지역에서 한변의 길이25m 또는 건축면적 330㎡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 ○문화재와 조화되는 색상 권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축사,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 ○높이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 ○건축행위시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이 구역에 중복되는 부분은 상위기준을 따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변경)

가. 변경 전

- 넥스플랜(주) 대표자 조지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7 C동 206호(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2))
-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정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306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나. 변경 후(대표자 및 주소변경)

- 넥스플랜(주) 대표자 박봉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41, 13층(청담동, 세신빌딩))
-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주) 대표자 박정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55, 4층(청담동, 소신빌딩))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2번지(송도1공구 B2블록)

나. 대지면적: 32,909.9㎡

다. 연 면 적: 320,430.1902㎡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지하5층 ~ 지상59층 / 5개동 / 1,205세대
 - 84A형 396세대, 84B형 108세대, 102A형 288세대, 120A형 396세대
 - 157A형 9세대, 157B형 1세대, 157C형 1세대, 175A형 4세대 175B형 2세대

○ 업무시설 지하5층 ~ 지상 50층 / 1개동 / 320호

○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마. 사업비: 1,375,419,000천원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9. 10. 29. ~ 2024. 2. 8.

5. 그 밖의 사항(변경)

○ 단위세대 커튼월 변경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3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굴포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 부평구청장 (도시재생과)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01-1번지 외 12필지
(110-24, 110-27, 108-8, 110-31, 307-9, 329-7, 325-399, 325-393,
325-462, 109-20, 325-451, 325-26)
 - 면 적 : 237.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로등 설치
 - 내 역 : 가로등(H=4.0m) 15개소, 분전반(0.485×0.4m) 1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21.07.05.~2026.07.04. (2021.07.05.~2022.01.04.)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18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차량을 공매처분 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 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공매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7.05.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 목 : 압류자동차 공매통지(제2021-1780호)

2. 공고기간 : 2021년 7월 05일 ~ 2021년 7월 20일까지

3.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 처분하고자 지방세징수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 및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도래 시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세협력담당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박은영(☎ 032-440-844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주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1	김*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 *, 1동 ***호(간석동, **아파트)	15거2039	보관기간경과 후반송	
2	장*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1, ***호 (학익동, **주택)	04무0959	수취인부재	
3	이*훈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번길 **-21, ***호(부개동, **빌리지)	15마1945	폐문부재	
4	이*형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길 *, 101동 ***호 (왕길동, **아파트)	10서6171	보관기간경과 후반송	
5	김*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번길 46, ***호(주안동, **아트빌)	15나3011	보관기간경과 후반송	
6	박*선	인천광역시 동구 금곡로**번길 ** (송림동)	15모8048	보관기간경과 후반송	
7	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02번길 **, A동 ***호 (주안동, **아트빌)	17우7606	보관기간경과 후반송	
8	장*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남로*번길 **-11, ***호(용현동, **아트빌)	26수4279	수취인불명	
9	김*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번길 ** (주안동)	54러6635	보관기간경과 후반송	
10	김*현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캐널로 ***, 103동 ***호(청라동,)	86도3586	폐문부재	
11	박*우	인천광역시 서구 옷우물로 **-1, A동 ***호(석남동, **아파트)	01저5542	폐문부재	
12	송*현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 926동 ***호(중산동,)	04서3841	폐문부재	
13	(주)청**트위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 지하***호(주안동)	04어8458	보관기간경과 후반송	
14	이*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로 **, 104동 ****호(옥련동, **아파트)	05저8775	폐문부재	
15	양*희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번길 ** (원창동)	06러6197	수취인불명	
16	이*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로**번길 **, 2동 ***호(청학동, **주택)	08다7468	수취인부재	
17	전*용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6, *층(석남동)	11모6895	폐문부재	
18	곽*호	인천광역시 중구 운중로 ***-15, ***호(중산동)	18저1477	수취인불명	
19	상*건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북로 *** (불은면)	21부8857	수취인부재	
20	박*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11, 1층 ***호(가정동)	25너4932	수취인불명	
21	김*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218동 ***호(청라동, **베르디움)	25다1203	수취인부재	
22	(주)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7, *층(도화동)	26너2404	수취인불명	
23	강*혁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 906동 ****호(중산동, **힐스테이트)	27서2172	수취인불명	
24	명*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3-16, ***호(청천동)	28부5231	수취인불명	
25	주식회사 *산업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2 (오류동)	32우5828	수취인부재	

연번	성명	주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26	김*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번길 **-4 (청천동)	36마5323	이사불명	
27	이*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102동 ****호(불로동, **아파트)	38모2257	폐문부재	
28	(주) 세***스드론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송도동, ****동 ***B)	38우0513	수취인불명	
29	성*준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번길 15, ***호(연희동, **아트빌)	39로2306	폐문부재	
30	최*운	경기도 김포시 상미로 **, 103동 ****호(****트 리버시티 1단지)	40라2919	수취인부재	
31	한*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287번길 **, 801동 ***호(산곡동, **아파트)	46머2186	수취인불명	
32	김*배(99%), 『김*선(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 ***호(청라동, **힐스빌)	46어0702	보관기간경과후반송	
33	김*준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335번길 **-14 (북성동1가)	47소6548	수취인불명	
34	김*대*	경상북도 성주군 창천*길 **-8 (가천면)	48무5627	수취인부재	
35	(주)하*광고기획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번길 24, ***호(청천동)	48버7801	보관기간경과후반송	
36	김*철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번길 1, 2동 ***호(검암동, **타운)	48어8686	수취인불명	
37	김*석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1, 2동 ***호(가좌동, **아트빌)	51누7296	보관기간경과후반송	
38	오*승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 **, 109동 ***호(청라동)	51저8723	폐문부재	
39	남*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번길 **, A-***호(청라동, 청라**더휴커널웨이)	54너2250	보관기간경과후반송	
40	남*필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번길 **, ***호(검암동, **캐슬)	54오6947	보관기간경과후반송	
41	E****DO E****DA JR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번길 **-1, ***호(십정동)	56누7104	보관기간경과후반송	
42	(주)**팀버 직권말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번길 **(석남동,	59라5823	보관기간경과후반송	
43	김*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 ***호(부평동, 유진마젤란주상복합A)	59우6077	수취인불명	
44	양*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 243동 ***호(청라동, **메이루즈)	60고2737	보관기간경과후반송	
45	E****ADA E****DO JR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촌로**번길 **-1, ***호(십정동)	60라4761	폐문부재	
46	권*현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번길 **-*, *동 ***호(가좌동, 장미하이츠빌라)	62도1085	보관기간경과후반송	
47	(주)현*해운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 ****빌딩 3층 ***호(사동)	64더2761	폐문부재	
48	민*형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번길 **-1, ***호(가정동)	67어2777	수취인부재	
49	임*진	인천광역시 서구 가남로 ***-18, ***호(석남동)	68머2538	수취인불명	
50	신*주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 7동 ***호(송현동, **아파트)	81무1548	수취인부재	

연번	성명	주소	공매물건	반송사유	비고
51	김*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남로**번길 6, ***호(십정동, **팰리스)	86구6733	폐문부재	
52	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번길 **-1, ***호(계산동)	86두5039	수취인불명	
53	이*섭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 1동 ***호(산곡동, **아파트)	86두6342	수취인불명	
54	HAMEED L KHAIRALLAH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번길 **, ***호(검암동)	86오7731	수취인부재	
55	지*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로***번길 **, ***호(도화동, **빌라)	89라1153	수취인불명	
56	주식회사 디*인소울컴퍼니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 *층(**동, **빌딩)	96소9328	수취인부재	
57	민*석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 ***호(**동, 럭스**)	인천31모71 65	수취인불명	
58	선우 *선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 103동 ****호(운남동, **센트럴 *****)	인천33노38 86	수취인불명	
59	이*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번길 12, ***호 (용현동, **빌리지)	07누3107	수취인불명	
60	신**러스건설주 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데뷰오피스텔8층***호(구월동)	82어5612	수취인부재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1년 7월 8일
인천광역시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1. 7.27.(화) 15:00~17:00

나. 장소: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4층)

다. 온라인 참여: 서울특별시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oullive>)

3.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개요

가. 계획의 범위: (시간적) 목표연도 2040년, (공간적) 수도권 전역(서울시·인천시·경기도)

나. 주요내용

- 수도권 미래비전 및 발전목표, 핵심전략과 추진과제 제시
- 중심지 설정 및 광역공간구조 개편, 부문별 계획 및 생활권 계획 수립
-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등

4. 기타사항

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은 사전 신청자 시·도별 각 15명으로 제한합니다.

○ 신청기간: 2021. 7. 8.(목) ~ 2021. 7.15.(목)

○ 신청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의 붙임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32-440-8678) 또는 전자우편(na4060@korea.kr)으로 제출

※ 참석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 후 공청회 전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선정되지 않은 분에게는 별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나. 의견서 제출

○ 제출기간: 2021. 7. 8.(목) ~ 2021. 8.10.(화)

○ 제출방법: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21554),
팩스(032-440-8678), 전자우편(na4060@korea.kr)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이후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참석 인원이 제한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목적 출국(경제활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요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수목적 출국(경제활동)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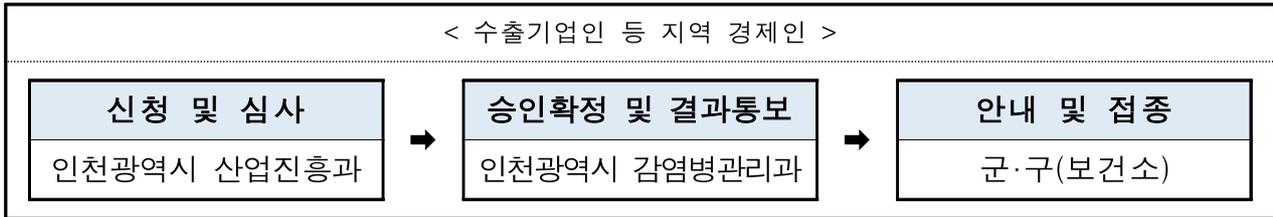
2021년 7월 7일
인천광역시장

1. 개요

- (목적) 필수 중요 경제활동 등의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개인과 지역사회를 보호
- (운영기간)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 시작 전까지 한시적 운영 (~8월 예정)
- (신청대상)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국외방문
 - 계약 및 약정 체결을 위한 국외방문
 - 설비 구축 및 보수·가동을 위한 협의, 기술협력, 시장개척 등을 위해 해외 현장에서의 활동이 불가피한 국외방문
 -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 심사부처가 해외방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 (소요기간) 신청부터 접종까지 약 1~2개월* 예상

* 접종 백신 종류에 따라 소요기간 변동 가능

2. 세부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수시
- (신청대상)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국외방문자
 - (출장기간) 제한 없음(출국일 기준 2021년 9월 30일 이내)
 - * 개인적인 교육, 취업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
 - * 장기파견자의 경우, 접종대상자 도래 또는 이른 출국 등으로 파견자의 접종이 완료되거나 부재한 상황에서 동반가족의 접종을 위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서식1) 및 증빙서류를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ipdincheon@korea.kr) 부서메일로 제출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문의처)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440-4282~4)
- (제출서류)

구분	필수 제출서류
공통	1.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신청서(서식1) 2. 여권 3.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5. 출국일 및 출장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예약서 포함), 출장명령서, 현지 호텔 바우처 등)
해당 경우(추가)	1. (장기파견자) 인사발령 증빙서류 2. (장기파견자 가족)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2. 심사

○ (심사기간) 매주 심사 진행

-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에서 심사 후 금요일까지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로 결과 제출 (서식2 활용)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사기관)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에서 심사 진행

○ (심사기준) 방문사유의 중요성, 대상기준 충족 여부 등 내부 기준에 따라 검토

3. 승인 및 확정

○ (승인기관)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 (결과 통보) 승인 완료 후 신청인에게 승인결과 통보*(신청 후 14일 이내)

- 관할 보건소(신청인의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 승인명단 통보

* 승인결과 통보는 이메일 또는 문자 발송 등

* 미승인 사례 예시

- 1차 접종 완료자 경우(국내외 포함, 백신 종류 무관), 접종 대상자 중복 등록된 경우(예, 위탁의료기관 접종예약 및 예비명단 등록자 등), 인적정보 확인 불가능한 경우(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백신 접종 가능 연령이 아닌 경우(18세 미만 소아·청소년(2004.1.1. 이후 출생자)), 출국일이 3분기 초과한 경우 등

○ (대상자 등록)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 '대상자관리(필수목적)'에 신청인 정보를 양식에 맞추어 등록

- 최초 대상자 등록은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에서 진행
- 그 후 변동내역은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 및 관할 보건소에서 변경 가능

4. 접종

- (접종백신) 화이자 백신
- (접종기관) 관할 보건소(예방접종센터 등)
- (접종일) 접종기관 일정에 맞춰 보건소가 피접종자와 일정 조율, 접종 간격에 맞춰 2차 접종까지 완료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 '대상자관리(필수목적)'에서 대상자 관리는 가능하나 예방접종센터 예약시스템에서는 예약불가(연동 안됨)

* 접종대상자는 신분증 지참 필요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누리집을 통해 국·영문 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백신제조사,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 정보 포함

** 항체 형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검사는 권장하지 않음

예방접종 심사결과 제출 서식

* 엑셀 서식 활용/ 국내 주소는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① 연번	② 신청부처	③ 성명	④ 성별	⑤ 생년월일	⑥ 주민등록번호	⑦ 연락처	⑧ 전자메일	⑨ 국내주소 (거주지)	⑩ 국내주소 (근무지)	⑪ 소속 / 직위	⑫ 방문 목적	⑬ 방문 국가 및 도시	⑭ 방문 기간	⑮ 국내 출국 예정일	⑯ 국내 입국 예정일	⑰ 접종 희망장소 (거주지 또는 근무지 근처 선택)
1																
2																
3																

* 17번 항목은 근무지 우선 순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 7. 7.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제2021-0- 인천광역시 -16호	대한아라리 종합예술단	박태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94번길 12, 3층	○ 예술 활동을 위한 봉사 ○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2021. 7. 7.	신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 단체명 :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인천본부

등록번호	단체명	주된 사업	변경사항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제2001-0- 인천광역시 -35호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인천본부	○ 재난예방 순찰, 복구, 통신지원 ○ 인명구조 ○ 범죄예방순찰 ○ 국제행사 및 중요 행사 홍보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84, 5층 (석남동)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 25, 3층 (석남동)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